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의 담배 진열, 노출, 광고 금지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383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운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2
-----------------	---

※ 참고자료	9
--------------	---

1. 담배 진열 규제 국가 현황 등	9
---------------------------	---

2. 청소년흡연 관련 통계 현황	12
-------------------------	----

3. 국내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 현황	13
------------------------------	----

4. 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현황	14
----------------------------------	----

I. 개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7. 4.
- (3) 회 부 일 : 2024. 7. 5.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은 담배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담배 광고와 판촉활동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및 진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정소매인이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게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담배 진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 및 진열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줌으로써 흡연시도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9조의4, 제28조 및 제34조).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¹⁾의 영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유치원 및 대학 제외)에 위치한 경우 해당 영업소 담배의 진열·노출 및 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²⁾.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신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이하 “지정소매인”이라 한다)은 영업소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 위치한 경우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정소매인----- ----- ----- ----- -----.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제9조의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① ----- -----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展示)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략)

② ~ ⑤ (생략)

제28조(보고·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

1. -----영업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내에 위치한 영업소는 제외한다]-----

-----.

-----.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보고·검사) ① -----

-----제9조제1항-----

1)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제1항의 담배 광고가 허용되는 경우>³⁾

- ①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를 전시·부착하는 행위(다만, 영업소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 ② 품종군별 연간 10회 이내에서 잡지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③ 사회·문화·음악·체육 등의 행사를 후원하는 행위
- ④ 국제선 항공기 및 여객선 등에서 하는 광고

□ 아울러,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서는 회원 당사국에 모든 담배광고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2023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금지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국가는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66개국임(참고자료 1 참조).
- 2021년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는 소매점 내 담배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총 195개국 중 111국(56.9%), 소매점 내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총 195개국 중 50개국(25.6%)에 달하고 있다고 집계됨.

< 담배광고 및 담배제품 진열 관련 FCTC 규정 >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 1. 당사국은 광고·판촉 및 후원의 포괄적 금지가 담배제품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임을 인식한다.
- 2. 각 당사국은 각국의 헌법 또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모든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조치를 시행한다. (이하 생략)
- 3. ~ 8. (생략)

제16조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 1. 각 당사국은 국내법이 규정한 연령 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담배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차원에서 효과적인 입법·집행·행정 또는 기타 조치를 채택·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 나. 상점의 선반 진열과 같이 담배제품에 대한 직접 접근이 가능한 모든 방식의 담배제품 판매를 금지

3) 제31조의2제4호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담배광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일반 담배(궐련)의 경우 2021년 4.4%, 2022년 4.5%, 2023년 4.2% 등 꾸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할 경우 흡연율(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은 2021년 5.2%, 2022년 5.4%, 2023년 5.1%로 일반 담배만 포함하였을 경우보다 높고 역시 꾸준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참고자료 2> 참조).

□ 이러한 청소년 흡연과 담배소매점에서의 진열, 광고 등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청소년 설문조사(916명) 결과 94.5%가 담배소매점에서 담배 진열, 85.5%가 담배 광고를 목격한 경험이 있었고, 담배 진열과 담배 광고를 목격한 후 각각 8.5%, 8.3%가 흡연욕구를 경험한 바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고⁴⁾, 담배 소매점주(원) 대상 설문조사(544명)에서도 소매점 담배 진열이 31.3%, 소매점 담배 광고가 34.7%로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음⁵⁾.

□ 개정안은 학생들의 주요활동 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 중 ‘교육환경보호구역’⁶⁾에서 담배 진열·노출 및 광고 규제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을 보호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청소년 담배 마케팅 노출 실태 모니터링 최종보고서」, 2018

5)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2019.

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록 하려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지정 취지, 청소년의 흡연 조장 환경 근절 필요성 및 담배광고 규제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키려는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개정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서 ‘대학교’ 및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의 경우 성인에 해당되고 유치원생은 대체적으로 담배광고 노출로 인한 흡연 유발효과가 높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구역도 동일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 ~ 17. (생략)

18.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제외한다)

- 다만, 2023. 8. 16.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4. 8. 17.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흡연 위해 환경을 확대하여 규율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개정안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제31조의2제4호), 개

정안에서는 안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영업소 내부에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판매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담배 진열, 노출 및 광고에 관하여 행위 태양과 각 규제와의 형평성 부합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보임.

- 개정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의 이용 접근성이 높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광고 금지는 미성년자 흡연 예방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청소년의 금연 인식 개선 및 흡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임.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구 분	의견 내용
보건복지부	• 아동·청소년이 편의점 등 소매점 이용 시, 담배 진열·광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므로 미성년자의 흡연 예방 차원에서 규제 의의가 있고, 아동·청소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도 규제 대상에 반영될 필요
한국담배협회	• 광고 및 진열금지가 시행되는 경우 소매인 피해 등이 초래될 수 있고, 담배의 진열판매 방식은 영업권의 일부로서 이를 금지할 경우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광고 및 진열 금지가 시행되는 경우 유통인력 감축 등 경영난 등도 우려됨.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1】

담배 진열 규제 국가 현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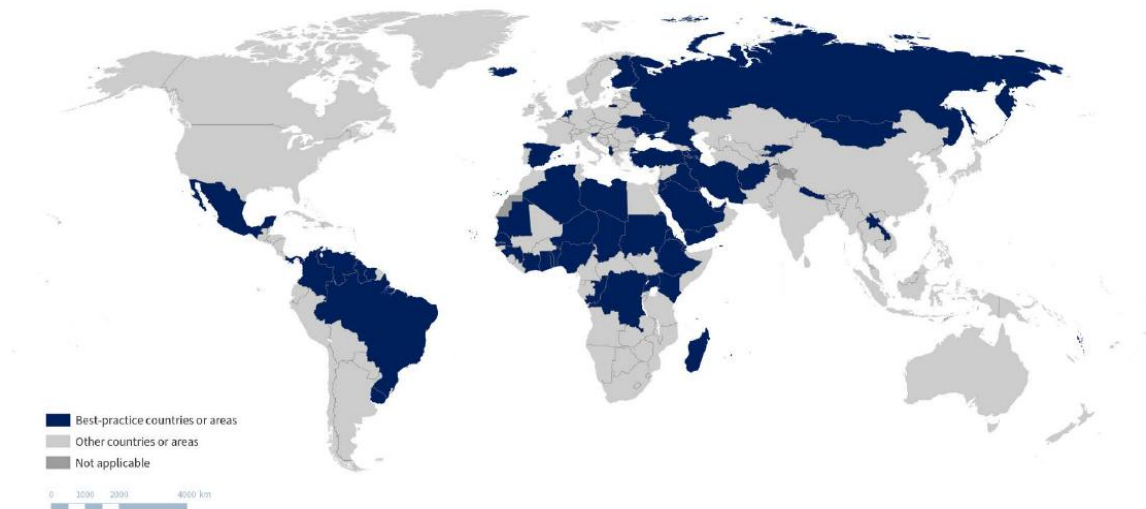
□ '23,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국가 최신 현황정보는 미제공

- 소매점 담배광고·진열 금지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국가 리스트(66개국)만 제공 중*

*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페인 등

< 포괄적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금지 이행국가 현황(2022) >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the highest level of achievement: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tigua and Barbud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enin, Brazil, Cabo Verde^a, Chad, Colombia, Congo, Cô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Eritrea, Ethiopia, Finland, Gambia, Ghana, Guinea, Guyana, Iceland,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Jordan, Kenya, Kiribati, Kuwait, Kyrgyzstan^a,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a, Libya, Madagascar, Maldives, Mauritania, Mauritius, Mexico^a, Mongolia, Nepal, Netherlands (Kingdom of the)^a, Niger, Nigeria, Niu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Panama, Qatar, Republic of Moldova,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Senegal, Seychelles, Slovenia, Spain, Sudan^a, Suriname, Togo, Türkiye, Tuvalu, Uganda, Ukraine^a, United Arab Emirates, Uruguay,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Yemen

□ '21,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

○ WHO 총 195개국 중 111개국(56.9%)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

연번	국가	연번	국가	연번	국가
1	아프가니스탄	39	조지아	77	파푸아뉴기니
2	알바니아	40	가나	78	폴란드
3	알제리	41	기니	79	포르투갈
4	앙골라	42	가이아나	80	카타르
5	앤티가 바부다	43	아이슬란드	81	몰도바 공화국
6	아르메니아	44	이란	82	러시아
7	아제르바이잔	45	이라크	83	사모아
8	바레인	46	아일랜드	84	사우디아라비아
9	방글라데시	47	이탈리아	85	세네갈
10	벨라루스	48	요르단	86	세이셸
11	벨기에	49	카자흐스탄	87	싱가포르
12	베냉	50	케냐	88	슬로베니아
13	부탄	51	키리바시	89	스페인
14	보츠와나	52	쿠웨이트	90	스리랑카
15	브라질	53	라트비아	91	수단
16	브루나이 개관	54	레바논	92	수리남
17	부룬디	55	리비아	93	에스와티니
18	카보베르데	56	리투아니아	94	시리아
19	캄보디아	57	마다가스카르	95	태국
20	차드	58	말레이시아	96	동티모르
21	칠레	59	몰디브	97	토고
22	중국	60	몰타	98	통가
23	콜롬비아	61	모리타니	99	터키
24	콩고	62	모리셔스	100	투르크메니스탄
25	코스타리카	63	몽골	101	투발루
26	코트디부아르	64	나미비아	102	우간다
27	크로아티아	65	네팔	103	우크라이나
28	사이프러스	66	뉴질랜드	104	아랍에미리트
29	콩고민주공화국	67	니제르	105	영국
30	덴마크	68	나이지리아	106	우루과이
31	지부티	69	니우에	107	우즈베키스탄
32	이집트	70	북마케도니아	108	바누아투
33	에리트레아	71	노르웨이	109	베네수엘라
34	에스토니아	72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110	베트남
35	에티오피아	73	오만	111	예멘
36	핀란드	74	파키스탄		
37	프랑스	75	팔라우		
38	감비아	76	파나마		

○ WHO 총 195개국 중 50개국(25.6%)에서 소매점 내 담배진열 금지

연번	국가	연번	국가	연번	국가
1	아르메니아	18	요르단	35	사우디아라비아
2	벨라루스	19	카자흐스탄	36	싱가포르
3	베냉	20	케냐	37	슬로베니아
4	콜롬비아	21	키리바시	38	수리남
5	콩고	22	마셜제도	39	스위스
6	코스타리카	23	모리셔스	40	타지키스탄
7	크로아티아	24	네팔	41	태국
8	덴마크	25	뉴질랜드	42	토고
9	에티오피아	26	나이지리아	43	통가
10	핀란드	27	니우에	44	트리니다드 토바고
11	감비아	28	노르웨이	45	투르크메니스탄
12	조지아	29	파키스탄	46	우간다
13	가이아나	30	팔라우	47	영국
14	아이슬란드	31	파나마	48	우루과이
15	이란	32	몰도바 공화국	49	베네수엘라
16	이라크	33	러시아	50	예멘
17	아일랜드	34	사모아		

【참고2】	청소년흡연 관련 통계 현황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

□ **청소년(중1~고3) 흡연 관련 통계 현황**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 **현재 흡연율** >

산출지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9.7	9.2	7.8	6.3	6.4	6.7	6.7	4.4	4.5	4.5	4.2
	남	14.4	14.0	11.9	9.6	9.5	9.4	9.3	6.0	6.0	6.2	5.6
	여	4.6	4.0	3.2	2.7	3.1	3.7	3.8	2.7	2.9	2.7	2.7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 담배(굴련)를 흡연한 사람의 분율

<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

산출지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3.0	5.0	4.0	2.5	2.2	2.7	3.2	1.9	2.9	3.3	3.1
	남	4.7	8.1	6.2	3.8	3.3	4.1	4.7	2.7	3.7	4.5	3.8
	여	1.1	1.5	1.5	1.1	0.9	1.1	1.5	1.1	1.9	2.2	2.4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의 분율

< **굴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 >

산출지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19년부터 통계 산출						2.6	1.1	1.4	2.3	2.1
	남							4.0	1.6	1.8	3.2	2.7
	여							1.2	0.5	0.8	1.3	1.4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굴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예)아이코스·글로·릴 등을 사용한 사람의 분율

< **담배 제품 현재 사용률** >

산출지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현재 흡연율	전체	'19년부터 통계 산출						7.3	4.8	5.2	5.4	5.1
	남							10.3	6.7	7.0	7.3	6.6
	여							4.1	2.9	3.3	3.4	3.5

※ 일반담배(굴련) 또는 굴련형 전자담배 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는 사람의 분율

【참고3】	국내 편의점 담배광고 및 진열 현황
-------	---------------------

□ 최근 5개년 주요 결과

- (편의점 기준) '22년 표본 조사 시, 담배 진열은 100%, 광고는 99.4% 실시

(단위 : 개소, %)

구분	담배진열 여부			담배광고 여부		
	전체	예	아니오	전체	예	아니오
2018년	499(100.0)	499(100.0)	-	499(100.0)	499(100.0)	-
2019년	427(100.0)	427(100.0)	-	427(100.0)	425(99.5)	2(0.5)
2020년	651(100.0)	651(100.0)	-	651(100.0)	651(100.0)	-
2021년	483(100.0)	483(100.0)	-	483(100.0)	480(99.4)	3(0.6)
2022년	1,277(100.0)	1,277(100.0)	-	1,277(100.0)	1,269(99.4)	8(0.6)

< 우리나라 담배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실태 >



< 담배소매점 담배광고 대표 유형 >



【참고4】	시·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현황(2023년)
--------------	---------------------------------------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매점은 약 6.5만개로 전국 소매점(약 14.1만개)의 절반 수준(약 46%)**

지역	전체 소매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매점		
		계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합계	140,799	64,720 (46%)	9,500 (7%)	55,220 (39%)
서울특별시	17,550	10,383	1,464	8,919
부산광역시	9,031	4,894	576	4,318
대구광역시	6,804	3,758	657	3,101
인천광역시	7,461	3,696	599	3,097
광주광역시	4,517	2,602	381	2,221
대전광역시	4,086	2,259	277	1,982
울산광역시	3,400	1,618	230	1,388
세종특별자치시	763	349	64	285
경기도	28,565	12,731	2,124	10,607
강원도	7,307	2,442	303	2,139
충청북도	6,336	2,612	325	2,287
충청남도	7,817	2,748	434	2,314
전라북도	6,424	2,769	385	2,384
전라남도	7,597	2,840	363	2,477
경상북도	10,607	4,052	596	3,456
경상남도	9,765	4,123	603	3,520
제주특별자치도	2,769	844	119	725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절대보호구역 제외)